

행정명령(EXECUTIVE ORDER)

행정법 섹션 6에 따른 지명

2012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허리케인 Sandy로 Long Island, New York City, Westchester, Rockland 및 주변 카운티가 엄청난 정전에 휩싸이면서 Long Island에 사는 90%의 고객들을 비롯해 2백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비상사태로 수 천 개의 업체, 민간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병원, 양로원, 요양원, 기타 장애 및 특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포함해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 비상사태로 지역 전반에 걸쳐 대량 수송, 다리, 터널, 도로 및 몇몇 해로를 포함해 주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발생하여 통신 서비스, 주유소, 거주 지역의 천연가스 배송, 대형 거주 단지 및 상업 시설로의 증기 배송을 포함한 갖가지 중요 시설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7일, 눈을 동반한 북동풍으로 주민들의 고생이 더욱 심해졌고 재산상의 피해 및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 일부의 정전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주민, 공업지역의 기타 주요 시설의 지속적인 전기 공급 두절 및 그에 따른 연속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침수된 유틸리티 선들로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에 처했고 공익시설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과 9월, 허리케인 Irene과 열대성 폭풍 Lee가 뉴욕주의 1백만 주민을 덮쳐 전기가 끊겼고, 일부 지역은 장기적으로 정전 피해를 입어 Long Island, New York City, Westchester, Rockland 및 주변 카운티뿐 아니라 Albany, Broome, Chenango, Chemung, Clinton, Columbia, Delaware, Dutchess, Essex, Franklin, Fulton, Greene, Hamilton, Herkimer, Montgomery, Oneida, Otsego,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Schoharie, Tioga, Tompkins, Warren, Washington 카운티가 큰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눈보라가 덮쳐 뉴욕주 300,000가구 이상이 정전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눈보라 발생 후 1주일간 전기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근의 일들과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유틸리티 비상사태 대응 계획과 절차로 미래의 비상사태를 예견하고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안전하고 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뉴욕주의 민간 유틸리티를 감독하는 관리 기관이지만 NYPA(New York Power Authority), LIPA(Long Island Power Authority), 뉴욕주 ERDA(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기타 규제 기관, 주 기관, 당국 및 의사정부기관들이 뒤엎혀 있는 관계로 권한, 관할 및 의무가 중복되어 있어 유틸리티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유틸리티의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와 대응, 특히 이러한 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뉴욕의 전력산업의 인허가, 인증, 감독 및 규제라는 측면에서 마련된 유틸리티 관리, 구조, 자원, 현 규제 체계 및 감독의 적정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의 필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욕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요소를 연구, 시험, 조사 및 검토해야 합니다.

뉴욕헌법(New York Constitution) 제IV부 제3조에 따라 주지사는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의해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

1. 행정법(Executive Law) 제6조에 따라, 나는 다음 사항을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는 바입니다: (A) (i) 비상 기후 상황 및 이후 상황 시 유틸리티의 활동을 포함해 비상 기후 상황 및 이후 상황 시 유틸리티의 비상대비절차 및 대응; (ii) 유틸리티의 비상대비절차 및 대응과 관련한 현재의 법률, 법칙, 법규, 관례 및 절차의 적정성; (iii) 기존의 감독 및 단속 방식의 적정성; (iv) 유틸리티가 비상대비절차 및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구조, 조직, 소유, 재무, 제어, 관리 및 관례; (v) NYPA(New York Power Authority), LIPA(Long Island Power Authority), 뉴욕주 ERDA(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의 관할, 의무 및 임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따라 뉴욕주에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시험, 조사 및 검토한다; (B) 비상대비절차 및 대응과 관련하여 대중을 보호하고 대중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즉시 반응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변경, 정책 및 규제 변경을 위한 권고사항을 알리고 권고하며 유틸리티 구조, 관리 및 관례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대로 개선한다; (C) 여기에 명시된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문제 또는 활동을 검토한다;
2. 이에 따라 위원회에 계는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요할 권한; 서약 또는 확인을 관리하며 서약한 증인을 조사할 권한; 조사, 검사 및 검토에 관련된 것으로 또는 그 자료로 간주되는 모든 서적, 기록 또는 문서의 생산을 요구할 권한; 그리고 직무의 의무 및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그 외 모든 기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에 나는 위원회에 행정법 제6조의 인가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주거나 부여한 모든 권한과 권력을 줍니다. 위원회는 모든 부서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면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나는 본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장에 다음 인사들을 임명하는 바입니다:

Robert Abrams, Co-Chair
Benjamin Lawsky, Co-Chair
Peter Bradford
Tony Collins
John Dyson
Rev. Floyd Flake
Mark Green
Hon. Joanie Mahoney
Hon. Kathleen Rice
Dan Tishman

4. 본 위원회는 업무 종결 시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중간, 예비 및 정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본 행정명령에서 “유틸리티(utilities)”라 함은 전기, 가스, 증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을 일컫습니다.
6. 각 주 부처, 기관, 사무실, 부서, 위원회, 국, 협의회, 당국 및 공공 비영리 기업은 본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가 의무 완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